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1. 1997년 12월 31일이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승용자동차·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소형화물자동차	10,000km	20,000km	40,000km
가스	승용자동차	80,000km	100,000km	120,000km
	소형화물자동차,경자동차	10,000km	20,000km	40,000km
경유	승용자동차	-	5년 또는 80,000km	
	소형화물자동차	-	-	40,000km

비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10년 또는 160,000km
소형화물자동차	60,000km	5년 또는 80,000km	
가스	경자동차	6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자동차	120,000km	120,000km
			10년 또는 160,000km
소형화물자동차	60,000km	5년 또는 80,000km	
경유	경자동차	6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소형화물자동차	60,000km	5년 또는 80,000km
	중량자동차	-	2년 또는 40,000km

비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적용기간은 제작일자(수입자동차의 경우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40,000km를 적용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60,000km를 적용한다.
-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가목을 적용하되, 인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

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인원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km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12,000km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80,000km로 한다.

3.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10년 또는 160,000km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km
	이륜자동차(50cc 이상)	1년 또는 6,000km
가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승용자동차·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120,000km
		10년 또는 160,000km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km
경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km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5년 또는 60,000km로 한다.
5.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인원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km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12,000km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80,000km로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 및 다목적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10년 또는 160,000km의 적용비율은 자동차제작자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의 총제작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별 연간 총제작대수가 5,000대 미만인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00년에 10년 또는 160,000km 적용 자동차를 25% 이상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1년에 제작대수의 80% 이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분	적용기간	2000년	2001년	2002년
	10년 또는 160,000km 적용비율		25% 이상	50% 이상

7. 제6호의 제작자별 연간 총 제작대수는 제작자별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N = (N-1) \times \frac{3abc}{ab+bc+ca}$$

(N : 해당연도 제작대수, N-1 : 직전연도 제작대수, a,b,c : 직전 3년간 각 연도의 연평균 증가율)

4. 2002년 7월 1일 이후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3년 1월 1일 이후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1·승용2	5년 또는 80,000km	10년 또는 160,000km
		10년 또는 160,000km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km	2년 또는 160,000km
이륜자동차(50cc 이상)	1년 또는 60,000km	2년 또는 10,000km	
가 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1·승용2	5년 또는 120,000km	10년 또는 160,000km
		10년 또는 160,000km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km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1·승용2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km	5년 또는 80,000km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km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	1년 또는 20,000km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자동차 중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또는 60,000km로 한다.

5. 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km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로 한다.

5. 2006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	10년 또는 160,000km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km
	이륜자동차(50cc 이상)	2년 또는 10,000km
가 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	10년 또는 160,000km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	5년 또는 80,000km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1년 또는 20,000km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km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로 한다.
5. 별표 17 제1호마목의 비고란 제6호와 같은 표 제2호마목의 비고란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별표 18 제4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6.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92,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년 또는 160,000km
	이륜자동차	2년 또는 10,000km
가 스	경자동차	6년 또는 100,000km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92,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6년 또는 20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7년 또는 50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1년 또는 20,000km
전 기	모든 자동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 가스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 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10만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160,000km로 한다.
5.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6.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선택적환원 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160,000km

7.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 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 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 른 자 동 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0,000km
가 스	경 자 동 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 형 승 용 차, 소 형 화 물 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 자 동 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택 시 에 한 함)	모든 부품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모든 부품	1년 또는 20,000km

8. 휘발유 및 가스사용 경자동차와 소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10년1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차제작자별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다.

적용기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고비율	25%	50%	75%	100%

9. 휘발유 및 가스사용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013년부터 적용하고,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25kW 이상 560kW 미만은 2013년 2월 2일부터, 19kW 이상 225kW 미만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경유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 적용시점은 별표17 제2호바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1.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교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7.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 차 동 차, 소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중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10년 또는 192,000km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초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2년 또는 160,000km	
	이 른 자 동 차	2년 또는 10,000km	
가 스	경 차 동 차	6년 또는 100,000km	
	소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중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10년 또는 192,000km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초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 차 동 차, 소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중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10년 또는 160,000km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6년 또는 300,000km	
	초 대 형 승 용 차 · 화 물 차	7년 또는 70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 기	모 든 자 동 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수 소	모 든 자 동 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10만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또는 192,000km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차 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은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은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은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경유사용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 [(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 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 차 동 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 · 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이륜 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모든 부품	2년 또는 10,000km
가스	경 차 동 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차 · 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유	경 차 동 차, 소형 승용차 · 화물차, 중형 승용차 · 화물차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택시에 한함)	모든 부품	10년 또는 160,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간

9. 별표 17 제1호바목, 제2호바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에 따라 인증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6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건설기계, 56kW 미만 농업기계 및 130kW 이상 56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 56kW 이상 13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1.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경우에는 5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12.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비고 제8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유 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중 택시의 경우(2015년 9월 1일부터 출고하는 택시에 한정한다)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92,000km로 한다. 다만,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8.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2년 또는 160,000km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130km/h 미만	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km/h 이상	2년 또는 35,000km
가스	경자동차	10년 또는 192,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2년 또는 160,000km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0년 또는 192,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 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모든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또는 192,000km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은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은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은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km/h 미만	모든 부품
최고속도 130km/h 이상		모든 부품	2년 또는 35,000km
가스	경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6년 또는 100,000km

			ECU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		10년 또는 192,000km
	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간

9.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사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7호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가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경형·소형 화물 차종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사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별표 18 제7호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건설기계, 56kW 미만 농업기계 및 130kW 이상 56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 56kW 이상 130kW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2016년 9월 3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1. 위 표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12. 이륜자동차의 보증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3.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15년 또는 240,000km로 한다. 다만,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9.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160,000km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130km/h 미만	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km/h 이상	2년 또는 35,000km	
가스	경자동차	10년 또는 192,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160,000km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는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 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모든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비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5년 또는 240,000km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인 경우에는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인 경우에는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 위 표의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160,000km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 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삼원촉매(Three Way Catalyst),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스로틀바디(Throttle body), 포지션센서(Position Sensor)	
--	--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 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km/h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km/h 이상	모든 부품	2년 또는 35,000km
가 스	경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 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 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는 제외한다)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 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 간
		37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 간
19kW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 간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0.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11.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차되는 경우에는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할 수 있다.

10.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km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130km/h 미만	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km/h 이상	2년 또는 35,000km	
가스	경자동차	10년 또는 192,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km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km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 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모든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	-------------------------------	--------------------------------------

비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5년 또는 240,000km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인 경우에는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인 경우에는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 위 표의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삼원촉매(Three Way Catalyst),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스로틀바디(Throttle body), 포지션센서(Position Sensor)	160,000km

-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 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km/h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km/h 이상	모든 부품	2년 또는 35,000km
가 스	경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 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 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 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 간
		37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 간
		19kW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 간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교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교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0.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11.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체차되는 경우에는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할 수 있다.